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가.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개정내용 반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2조)
 -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의해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안 제4조~제5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의회 의원, 군민 등
-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규정(안 제6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 2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체계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입법의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추천은 임시회 개최, 본회의 의결 등 비경제적이므로
- 안 제4조제3항제1호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의결내역】

- 안 제4조제3항제1호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평창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및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